

**경남지역 금융기관 점포현황**  
(2013년 12월 31일 기준)

기관명	점포수
합 계	1,952
예금은행(a+b)	383
일반은행(a=c+d+e)	253
시중은행 (c)	117
지방은행 (d)	136
외은지점 (e)	-
특수은행 (b)	130
비은행기관	1,569
수출입은행	1
종합금융회사 <sup>2)</sup>	-
자산운용회사	472
신탁회사 <sup>3)</sup>	456
상호저축은행	13
신용협동조합 <sup>4)</sup>	58
상호금융	176
새마을금고	102
우체국 <sup>5)</sup>	291

주: 1)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출장소를 포함, 점포 소재지 기준

2) 기관수 기준

3) 은행, 증권회사, 보험사의 신탁계정을 신탁회사 지칭

4) 조합수(본소 기준) 또는 금고수 기준

5) 체신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지방우정청 제외



**경남지역 비은행기관 시군별 점포현황**  
(2013. 12. 31 현재)

기관별	합 계	창원	진주	통영	사천	김해	밀양	거제	양산	시합계	의령	함안	창녕	고성	남해	하동	산청	함양	거창	합천	군합계	
비은행기관	<b>1,569</b>	140	72	35	28	47	30	42	25	419	19	17	24	24	22	26	15	20	25	30	222	
수출입은행	<b>1</b>	1								1											0	
종합금융회사	<b>-</b>									0											0	
자산운용회사 <sup>1)</sup>	<b>472</b>									0											0	
신탁회사 <sup>1)</sup>	<b>456</b>									0											0	
상호저축은행	<b>13</b>	5	2	2		1		1	1	12									1		1	
신용협동조합	<b>58</b>	28	13	1	1	1	2	4		50	1		1	1	1	1		1	1	1	8	
상호 금융	농협 <sup>2)</sup>	<b>140</b>	16	13	6	8	13	10	11	6	83	3	5	7	5	5	8	1	6	8	9	57
	수협	<b>18</b>	5		7	2			1		15				1	1	1					3
	산림조합	<b>18</b>	1	1	1	1	1	1	1	1	8	1	1	1	1	1	1	1	1	1	1	10
	소계	<b>176</b>	22	14	14	11	14	11	13	7	106	4	6	8	7	7	10	2	7	9	10	70
새마을금고	<b>102</b>	36	16	7	5	10	3	5	6	88	1	1	1	2	4	1	1	1	1	1	14	
우체국	<b>291</b>	48	27	11	11	21	14	19	11	162	13	10	14	14	10	14	12	11	13	18	129	

주 : 1) 시군별 점포수 조사하지 않음

2) 점포 소재지 기준(부산경남화훼농협, 부산우유농협은 부산광역시 소재로 제외)

**경남지역 금융기관 점포현황**  
(2013년 12월 31일 기준)

기관명	점포수			
	2012년		2013년	
	경남	전국	경남	전국
합 계	1,921	33,624	1,952	33,406
예금은행(a+b)	376	7,747	383	7,701
일반은행(a=c+d+e)	246	5,736	253	5,682
시중은행 (c)	117	-	117	4,653
지방은행 (d)	129	-	136	974
외은지점 (e)	-	-	-	55
특수은행 (b)	130	2,011	130	2,019
비은행기관	1,545	25,877	1,569	25,705
수출입은행	1	1	1	14
종합금융회사 <sup>2)</sup>	-	8	-	8
자산운용회사	460	9,669	472	9,594
신탁회사 <sup>3)</sup>	442	9,295	456	9,250
상호저축은행	14	375	13	339
신용협동조합 <sup>4)</sup>	58	949	58	942
상호금융	176	1,390	176	1,386
새마을금고	102	1,420	102	1,402
우체국 <sup>5)</sup>	292	2,770	291	2,770

주: 1)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출장소를 포함, 점포 소재지 기준

2) 기관수 기준

3) 은행, 증권회사, 보험사의 신탁계정을 신탁회사 지칭

4) 조합수(본소 기준) 또는 금고수 기준

5) 체신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지방우정청 제외